	대의원회 규정	문서번호	3-4-7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19. 11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부서	학생처

제1조(지위 및 구성) 지위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
(단, 학사행정문제의 최고의 결정권은 확대간부회에 있다).
2. 대의원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3. 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거하여 선출된 각 학년 학급당 반대표와 부반대표로 구성된다. 임기는 한 학기로 하여 매 학기 마다 대의원을 선출한다.
4. 대의원은 운영위원과 동아리장을 겸할 수 없다.

제2조(임원선출) 대의원회의 의장은 재적 대의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/3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제3조(업무 및 권한)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칙개정 발의권 및 의결권
2. 사업예산승인권, 결산심의권
3. 운영활동에 관한 감사권
4.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권
5.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
6. 대의원회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당국자에 대한 질의권
7.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대의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
8. 학생회 운영상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
9.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4조(회의 및 소집) 회의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를 가진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.
3.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4. 소집일은 3일전에 공고하고 긴급 시는 구두로도 소집 가능하다.

	대의원회 규정	문서번호	3-4-7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19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부서	학생처

제5조(의결)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업무 및 권한의 1, 5, 7, 8항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으로 찬성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